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99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990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나238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포천시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소617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판결 선고 2015. 3. 12.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나23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소액사건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어느것도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